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5066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이영정

피 고 유한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김희재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67,533,6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21,99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에게 8,33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7. 12. 20.자 채무변제합의는 45,538,4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33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8. 5. 18.부터 2018. 7. 28.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광주 광산구 F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대금 21,995,2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9차전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5.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21,99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40552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0.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8,33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소외 G로부터 광주 서구 H 소재 숙박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 C은 2017. 10. 25. 소외 회사로부터 그 중 소방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57,2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2017. 11. 21. 그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5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7178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0.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3,000,000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금 전액과 그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소외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4061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7. 'G는 소외 회사에게 78,0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10.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G는 위 판결에 광주지방법원 2019나67745호로 항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2. 20. 소외 회사를 채무자, G를 제3 채무자, 청구금액을 68,302,947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G에 대한 위 판결상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36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3. 2. 제3 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사건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 13. 'G는 피고에게

68,302,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청구원인) 요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상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알려 피고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도록 통모하였는바, 피고가 위 채권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2020.

2. 20.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2020. 2. 20.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0. 2. 20.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 채무자를 G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을 두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청구원인) 요지

소외 회사는 2017. 12. 20.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변제합의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와 사이의 2017. 12. 20.자 채무변제합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7. 2.경 시공한 공사 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7178호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회사가 위 법원이 2017. 12. 20.에 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피고에 대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새로운 채무부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지]

채권 양도계약

아래 도표 내용과 같은 채권에 관한 피고와 소외 [] 주식회사([]

[]) 사이의 2020. 2. 20.자 채권양도계약

[] 주식회사가 2017. 9. 30. []와 체결한 증주 서구 []
[] 숙박시설 증축공사 중 토목, 소방, 전기, 관널공사계약(공사대금
246,400,000원)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잔금 68,302,947
원

